###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(김교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82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김교흥・모경종・허종식

이훈기 • 박선원 • 이용우

노종면 • 유동수 • 정일영

문진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하늘과 땅, 바다가 연결되어있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·물류,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, 바이오·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·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해 관세 등의 면제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,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 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자 함.

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, 연구소 유치 및 연구개발·인력양성·공동제작 등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, 국제기구, 외국인투자기업, 국제학교,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인천광역시를 항공 여객·물류,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, 바이오·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·관광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 조).
- 다.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함(안 제2장).
  - 1) 인천광역시 글로경제거점도시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,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둠(안 제7조 및 제8조).
  - 2)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성 및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,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10조).
  - 3)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11조).

- 라.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항·항만 경쟁력 강화,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, 국제회의 및 문화·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분야별시책을 규정함(안 제3장, 제13조, 제15조, 제20조 및 제26조).
  - 1)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,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(안 제 13조 및 제14조).
  - 2)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, 국제물류특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, 자유무역지역으로 보고,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(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).
  - 3)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관할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,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,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(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).
  - 4)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및 관련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·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, 문화·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규정함(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).

- 마.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교육환경,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(안 제4장, 제38조, 제44조).
  - 1) 글로벌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,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 사항을 포함함(안 제39조부터제43조까지).
  - 2)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의 특례, 외국인자녀어린이 집, 외국인서비스 확대, 여행객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글로벌 생활 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(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).
- 바.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 법률상 지정된 각종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 를 마련함(안 제5장).
- 사.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재정지원 의 근거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장).

####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·역사적·인문적 특성을 살려 항공, 물류, 에너지, 생명, 의료, 관광, 교육,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글로벌경제거점도시"란 인천광역시가 축적해 온 인적·물적·사회적 자원의 기반 위에 국내외 다양한 첨단기업 등이 보유한 양질의 자본이 투자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혁신적· 융합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세계 경제의 거점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. 제3조(적용범위) 이 법은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다. 다만, 다른 시·도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이 법에 따른 특구· 지구·단지 등(이하 "특구 등"이라 한다)이 조성된 경우에는 특구 등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.
- 제4조(국가의 책무) ① 국가는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

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입법・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는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도로·철도·공항 및 항만의 건설·유지 및 보수, 산업체 이전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차원의 기반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·재정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는 인천광역시가 충분한 자율성과 책임하에서 글로벌경제거 점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인천광역시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인천광역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인천광역시 조례(이하 "시조례"라한다)를 제·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③ 인천광역시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자체적인 지역혁신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에 규정된 인천의 글로벌경제거점도 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및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 법이 규정한 규제혁신 및 특례지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제2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

- 제7조(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의 설치) ① 인 천광역시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 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  - 2.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 - 3.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
  - 4. 제16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
  - 5. 제21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
  - 6. 제23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
  - 7. 제31조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
  - 8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
  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

-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정부위원: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2. 민간위원: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실 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.
-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실무추진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) ①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.
  - 1. 제7조제6항에 따른 실무추진단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 - 2.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- 3.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- 4. 인천광역시 첨단산업 분야 육성 및 관련 기업 등 지원 및 글로벌 경제거점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
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.
- 제9조(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조치)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  - 2.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 - 3. 항공, 물류 및 디지털·첨단산업 등 인천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 에 관한 사항
  - 5. 글로벌 교육의 진흥 및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
- 6.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
- 7.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및 유치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수립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・보완하여야 한다.
- ④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⑤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·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) ①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인천광역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. 수립된 시행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③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의 각 항목에 대하여 글로벌경제거점도

- 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④ 인천광역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 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실태조사) ①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에 관한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와 요건 및 결과의 활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제3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기반조성 제1절 공항·항만 경쟁력 확보

제13조(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인 천광역시장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 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(이하 "공항경 제권"이라 한다)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공항운영자(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)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 공항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·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) 국가, 인천광역시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·철도·용수시설(用水施設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제15조(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·항공·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·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세계적 물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항 및 입출항 항만의 최적화, 환적 등의 신속성 확보 등 국내·외 물류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발전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③ 정부는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활동의 촉진, 제조·유통산업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물류 산업의 육성, 물류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국제물류특구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중 공항·항만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

- 진화·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물류특구(이하 "국제물류특구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물류특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 지정된 국제물류특구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.
- ③ 인천광역시장은 국제물류특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수 있다.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- ④ 인천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목적상 인접한 시·도의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·도지사의 동의를 얻어해당 시·도의 관할지역을 포함하여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변경·해 제를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⑥ 국제물류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요건, 국제물류특구 지정·변경· 해제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국제물류특구 지정의 효과) 제16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

- 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해당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·변경 또는 수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.
- 1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및 제8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,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
- 2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
- 3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2조의2 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·변경
- 4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변경,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의 수립
- 제18조(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) ① 국제물류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각종 기업·기관·단체 등(이하 "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"이라 한다)이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 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「주세법」 제20조제1항제1호,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

나 환급한다.

- ②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이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에 대해서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(零稅律)을 적용한다.
- ③ 국제물류특구 내에서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.
- 제19조(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) ① 정부는 국제물류특구로 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의 공항·항만과 그 배후지 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 공항·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 - ③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에서의 관세절차 및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④ 정부는 국제물류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 - ⑤ 인천광역시장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,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

보조할 수 있다.

#### 제2절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

- 제20조(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시책) ① 정부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산업(이하 "첨단산업 등"이라 한다)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육성시책을 마련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  - 1. 항공 여객, 항공 물류, 항공 MRO, 항공 제조, 관광 등 공항경제 권신산업
  - 2.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
  - 3. 해운 항만 등 첨단해양산업
  - 4. 수소차, 전기차, 도심항공교통(UAM)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
  - 5. 로봇, AI 등 디지털신산업
  - 6. 바이오, 의료, 의약 등 헬스케어산업
  - 7. 국제기구, 외국인투자기업, 국제학교,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 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산업
  - ② 정부는 첨단산업 등의 생태계 조성·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 적 동향·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·분석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1.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

- 2.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연구소의 설치 또는 지정
- 3. 첨단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유치 및 이전에 필요한 지원
- 4. 첨단산업 등의 분야별 지원센터 등의 설립 또는 지정
- 5.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조치
- ③ 정부는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보교환, 기술협력, 산업계 대응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등에 대한 국제박람회 등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를 포함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육성 및 지원시책의 추진에 관한 행정적·재정적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산업 등의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인천첨단과학기술단지(이하 "과학기술단지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학기술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6조에 따른 산업단

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.

-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- ⑤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) ① 인천광역시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단지가 「국가첨단전략산 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국가첨 단전략기술의 연구·개발·사업화 등과 관계되는 경우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에도 불구하고,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있다.
- 제23조(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) ①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할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위

-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(이하 "투자진흥지구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③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1. 투자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
- 2.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인천광역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 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·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·방법, 관리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(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) ① 국가 및 인천 광역시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·투자기관·연 구기관 등에 대한 용지매입비의 융자,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인천광역시는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·투자기관·연구기 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· 운영 지원
- 2.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
- 3.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
- 4. 창업보육센터,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
- 5. 공동 매장의 설치 · 운영 지원
- ③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기업·투자기관 ·연구기관 등에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5조(투자진흥지구 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) ① 투자진흥지구 내의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의무 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
  - 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  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
  - 4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
  - 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
  - ② 외국투자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 제55 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.
  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투자기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

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 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 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제26조(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) 국가는 인천광역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,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의 국가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.
- 제27조(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) ①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1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 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
  - 2.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
  - 3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기준

- 제28조(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) ① 인천광역시장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인천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·운영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# 제3절 국제회의 및 문화 · 관광 거점 조성

- 제29조(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설치 취지를 살려 인천광역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  - ②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1.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
  - 2. 국제회의 유치·개최 지원
  - 3.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
  - 4.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
  - 5.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

- 6. 국제협력의 촉진
- 7.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
- 8.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 · 진흥에 필요한 사업
- 제30조(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) 법무부장관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 위임된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31조(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) ① 인천광역시장은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·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②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,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 집 및 제공
  - 2.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
  - 3.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
  - 4.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
  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시조례로 정하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

- 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.
- 제32조(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) ①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14조에도 불 구하고 시조례로 정하는 기관·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·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.
- 제33조(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) ① 인천광역시장 은 창작성,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내의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 화기술 개발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의 방법·절차 등은 시조례로 정한다.
- 제34조(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)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

- 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국제회의장·도서관·박물관·문예회관·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, 관광·숙박·위락시설 및 체육시설(이하 "문화·관광시설"이라 한다)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 ·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 등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·허가 등을 하거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.
- 제35조(관광지의 개발 및 조성)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세계 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숙 박·관광·여가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 등 휴양지를 개발·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·조성에 필요한 투자 유치 및 지원방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③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·조성에 관한 방법·절차 및 지원 등 관광지 조성·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6조(관광지 등의 처분 특례) ① 구청장은 「관광진흥법」 제59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자연친화적 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·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원형지로 공급(매각, 임대, 위

- 탁 · 경영)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사항은 「도시개발법」 제25조의2 를 준용한다. 이 경우 「도시개발법」의 "개발계획", "실시계획"은 「관광진흥법」의 "조성계획"으로 본다.
- 제37조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)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에 적합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의 확충·관리·이용 및 도시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정할 수 있다.

# 제4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제1절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

- 제38조(글로벌 교육환경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)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, 필요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학교가 외국의 학교와 교육

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·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상·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④ 교육부장관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관련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 원할 수 있다.
- 제39조(자율학교 운영의 특례) ① 인천광역시 소재 국립·공립·사립의 초·중등학교는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"시교육감"이라 한다)의지정을 받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8조, 제19조제4항, 제21조제1항, 제22조제2항, 제23조제3항, 제24조, 제26조제1항, 제29조, 제31조, 제39조,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(이하 "자율학교"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  -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(受學)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제40조(유아교육에 관한 특례) ① 「유아교육법」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,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시교육 감이 정할 수 있다.

- 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 에 대하여는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41조(외국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특례 등) ① 외국학교법 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교육발전 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.
  - 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: 시교육감
  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: 인 천광역시장
  - ②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는 국민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(이하 "국제고등학교"라한다)의 경우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1조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6조·제32조제1항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52조·제54조의4제1항·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, 임용기간, 급여, 근무조건,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

- 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.
- 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⑥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, 제24조, 제26조,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⑦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을 준용한다.
- 제42조(대학설립·운영에 관한 특례) ① 「고등교육법」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·산 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립·운영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 정의 수업연한, 학위수여, 교과목이수인정, 산업체위탁교육, 전공심 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1조, 제35조, 제38 조, 제40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, 제50조의2, 제50조의3 및 제5 1조를 준용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(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)

- 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인천광역시장은 물류·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「고등교육법」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(이하 "대학원대학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- ⑤ 대학원대학의 조직, 교원,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3조(국제학교의 설립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(이하 "국제학교"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
  - 2. 이 법,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(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에 따라 설립된법인으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법인
  - ② 국제학교를 설립·운영하려면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·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시교육감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③ 국제학교의 운영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,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, 학교운영규정, 입학기준, 학력인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시조례로 정

한다.

- ④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의 설립·운영에 대해서는 이법 및 시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사립학교법」 및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⑤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의 설립·운영에 대해서는 이법 및 시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국제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#### 제2절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

- 제44조(외국인의 생활환경 증진을 위한 시책)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외국기업·외국투자기관의 유치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을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위상에 부합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시설·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·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45조(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의 특례) ① 법무부장관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에 외국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외국기업 및 외국 기관의 유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조 및 제10조 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 등의 각종 기관·학교·

기업 등에서 근무하거나 파견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등으로 이전하는 외국인의 체 류기간을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-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등으로 이전하는 외국인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자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따로 고시할 수 있다.
- 제46조(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인천광역시장 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특구 등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외국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・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.
- 제47조(외국방송의 재송신) 인천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는 「방송법」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·운 용할 수 있다.
- 제48조(외국어 서비스의 제공) ① 인천광역시장은 외국인의 정주환경

조성 및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1.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
- 2.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 접수ㆍ처리
- 3.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및 대중교통 내 외국어 안내 서비스
- 4.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
- 5. 외국인의 고충 · 민원에 대한 종합상담센터 설치
- 6.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 · 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서비스
-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.
- 제49조(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) 인천광역시(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접한 다른 시·도의 관할지역도 포함한다) 여행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천광역시 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·부가가치세·개별소비세·주세·교육세·농어촌특별세·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.
- 제50조(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) 인천광역시는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내 외국인의 의료 이용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1.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
- 2.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통계·정보의 수집
- 3.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
- 4.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
- 5.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
- 6.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5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사업 등의 실시 및 특례

- 제51조(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구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특구 등의 개발사업(이하 "개발사업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계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, 제22조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이 확정 및 공고된 것으로 본다.
  - ③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, 건축 등 행위의 제한·금지,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「국토의 계획

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- ④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도시·군 관리계획은 제2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결정한다.
- ⑤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「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 등의 조성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⑥ 인천광역시장이 제5항에 따른 특구 등을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개발제한구 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① 인천광역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특구 등의 조성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, 해제 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 또는 복구계획의 제시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.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 금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⑧ 국방·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⑧ 국방·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환경평가등급의 적용, 개발제한구역 내연계사업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대하여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

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- ⑨ 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한다.
- ① 인천광역시장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용도대로 허가할 수 있다.
-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을 「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 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52조(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) 인천광역시는 특구 등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53조(국·공유재산의 임대 등의 특례) ① 기획재정부장관, 국유재산 민관리청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은 「국유재산법」과 「공유재산 및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토지·공장과 그 밖의 국·공유재산(이하 이 조에서 "재산 등"이라 한다)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

각종 기업·기관·단체 등(이하 "입주기업 등"이라 한다)에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 또는 대부(이하 "임대"라 한다)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된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 증여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 등의 임대료는 「국유재산법」 제3 2조제1항 및 제33조(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, 제23조,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, 공유재산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, 필요하면 외화(外貨)로 표시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등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

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「국유재산법」 제50조제1항·제2항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, 공유재산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- ⑥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 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, 공유재산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1. 「국유재산법」 제34조(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2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및 제34조
- 제54조(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① 특구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, 인천광역시장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
  - ②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, 특구 등에 대해서는 시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필요한 경우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정할 수 있다.
- 제55조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특구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

- 률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, 인천광역시장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
- 제56조(지역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)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천광역시장이 특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규제자유특 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 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 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이 특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제57조(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 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58조(법인세 등 조세의 감면)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·연관산 업기관 등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 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세·취득세·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입주기업 등과 입주기업 등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・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- 제59조(부담금 등의 면제)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법」, 「초지법」, 「소지법」, 「장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하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, 기반시설설치비용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공유수면 점용료・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・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을 위한 재정확보

- 제60조(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) ①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- 1.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  - 2.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  - 3.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
  - 4. 개인, 법인,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
  - 5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
  - 6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
  -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  - 1.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조성사업
  - 2.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
  - 3.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 등 조직의 설립·지정·운영에 필요한 비용
  - 4. 이 법에 따른 인력양성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
  - 5.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의 비용 지원
  - 6. 특별회계의 조성 · 운용 ·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  - 7. 그 밖에 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

- 제61조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- 제62조(예비비)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제63조(세출예산의 이월)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#### 제7장 보칙 및 벌칙

- 제64조(청문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 - 1. 제16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해제
  - 2. 제21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 해제
  - 3. 제23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
  - 4. 제31조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해제
- 제65조(보고·검사 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의 시행자,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및 관계인의 사무실·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행사업이나

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127조,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를 적 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67조(벌칙) 제6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68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69조(과태료) ①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